환경부

수도권대기환경청

수신 통합관리사업장(발전업종) 대표자 귀하
(경유)
제목 발전증기업종 수질 허가배출기준(총유기탄소) 관련 알림

1.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-1899(2021.09.08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COD에서 TOC로 전환되면서 「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」 별표15의 최대배출기준도 '20.2.27일부터 총유기탄소(TOC)로 개정·시행되고 있습니다.

3. 이에,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○ 통합허가 시 COD 허가배출기준을 최대배출기준(40mg/L)으로 부여받은 기존사업장은 **'22.1.1.부터 TOC로 변경적용됨**

- TOC 기준 : 22mg/L (자가측정 주기는 기존 COD와 동일)
- 기존사업장 **TOC 자동측정기기 부착 유예기간** : '23.6.30.(물환경보전법 참고)

○ 허가 시 **"COD에서 TOC 로 대체될 경우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에 대해 환경부와 별도 협의**"토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사업장의 경우 동 문서로 협의 갈음(단, 최대배출기준(COD 40mg/L)보다 강화된 기준을 부여받은 사업장 등 허가배출기준에 대해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로 문의). 끝.

수도권대기환경청장

주무관	안형례	과장	전결 2021.9.9. 김건식
협조자			

시행 대기총량과-5942 (2021. 9. 9.) 접수

우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/ 0

전화번호 031-481-1470 팩스번호 031-481-1445 / anddong@me.go.kr / 대국민 공개